

의안번호	2206556
의 퇴 인	홍기원의원
회 답 일	2025.2.5.
추계번호	24D592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 (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4조제4항(휴직자·장기파견자 등의 결원 보충) 신설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14조제4항(휴직자·장기파견자 등의 결원 보충) 신설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최근 5년간 군무원은 정원 대비 평균 3.1%의 결원이 발생하였으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1] 군무원 결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5급	정원	5,703	5,800	5,881	6,024	5,949	5,871
	결원	55	61	52	66	75	62
	비율	(1.0)	(1.1)	(0.9)	(1.1)	(1.3)	(1.1)
6급	정원	5,214	5,384	5,682	6,102	6,410	5,758
	결원	216	234	231	249	237	233
	비율	(4.1)	(4.3)	(4.1)	(4.1)	(3.7)	(4.0)
7급	정원	6,685	8,212	9,446	10,509	10,901	9,151
	결원	317	398	458	596	614	477
	비율	(4.7)	(4.8)	(4.8)	(5.7)	(5.6)	(5.2)
8급	정원	6,034	7,122	8,992	10,254	10,464	8,573
	결원	98	130	172	294	430	225
	비율	(1.6)	(1.8)	(1.9)	(2.9)	(4.1)	(2.6)
9급	정원	4,851	5,038	6,621	7,519	7,477	6,301
	결원	24	40	66	151	226	101
	비율	(0.5)	(0.8)	(1.0)	(2.0)	(3.0)	(1.6)
합계	정원	28,487	31,556	36,622	40,408	41,201	35,654
	결원	710	863	979	1,356	1,582	1,098
	비율	(2.5)	(2.7)	(2.7)	(3.4)	(3.8)	(3.1)

자료: 국방부

□ 개정안은 군무원의 휴직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현재보다 적극적으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국방부에 따르면, 군무원을 한시임기제로 채용할 경우, 1인당 연간 인건비는 아래 표와 같음

[표 2] 군무원 대체 1인당 연간 인건비(2024년 기준)

(단위: 천원)

구분	5호	6호	7호	8호	9호
1인당 연간 인건비	33,096	27,307	25,231	23,723	23,338

주: 주 35시간, 11개월 근무 기준

자료: 국방부

- 다만, 국방부는 현재도 군무원 결원 시 한시임기제군무원의 채용을 통해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체인력 운용 현황 자료는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라 군무원 결원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체인력 확보를 노력할 경우, 그에 따라 추가적으로 증원될 대체인력 규모, 근무기간 등에 대해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IV.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